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06
------	------

제출일자 : 2024. 11. 13.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만 나이 규정과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하는 등 법령 불부합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부터 제17조)

나. 만 나이 규정 정비(안 제18조)

다. 불필요한 등록규제 정비(안 제19조)

-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한 규제 폐지
- 과도한 규제 완화

라. 정비대상 목록

연번	구분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소관부서
1	유형 ①	국어 진흥 조례	제6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통담당관
2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제2조 제9조 제13조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사무 → 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편람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민원처리기준표	소통담당관
3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 「국가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재정법」	행정지원과
4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제2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행정과
5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농산물품질관리법」 품질인증 농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원양산 포함) ·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인증 농산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수산물 · 「축산물가공처리법」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지원과
6		공인 조례	제1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민원여권과
7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2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기획예산과
8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기획예산과
9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경제과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66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 무 과
11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재 무 과
12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7조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재 무 과
13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세 무 1 과

연번	구분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소관부서
14	유형 ①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과
1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보전법」	환 경 과
16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제1조 제4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민원사무처리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환 경 과
17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11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건정책과
18	유형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1조	· 만 65세 이상 → 65세 이상	보건정책과
19	유형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	· 상위법과 중복된 규제 폐지 (제18조제1호 삭제) · 상위법 위임범위를 초과한 규제 폐지 (제18조제2호 삭제)	지역경제과
			제21조	· 과도한 규제 완화 : 신청 자격 규제 폐지 (제21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조례 소관부서와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
을 위한 경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로, “민원사무 중”을 “민원 중”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민원사

무편람”을 “민원편람”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을 “「국가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원양산 포함)
-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 라.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 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제6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조 중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원 접수·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전자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정부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6.·7. (생략)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

- ① (생략)
-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전자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되 감사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

-----.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민원
중 -----

-----.

6.·7. (현행과 같음)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③ -----
----- 민
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

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
하여야 한다.

④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업
무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
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최신자료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 ① (생략)
-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
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
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
수·처리하여야 한다.

-----.

④-----

----- 민원편람 -----

-----.

제13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 ① (현행과 같음)
- ②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 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 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 는 공무원) ①----- ----- ----- -----. 1.·2. (현행과 같음) 3. -----

<p>종사하는 공무원 : <u>예산회계법</u> · <u>물품관리법</u> 및 <u>지방재정법</u> 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 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 는 자를 제외한다)</p> <p>4. ~ 8. (생략) ② ~ ④ (생략)</p>	<p>----- 「<u>국가재정</u> <u>법</u>」,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u> <u>법</u>」, 「<u>지방재정법</u>」----- ----- ----- -----</p> <p>4.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기부금</u> <u>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u> <u>률</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 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기부금품”이란 「<u>기부금품</u> <u>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u> <u>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 품을 말한다.</p> <p>2.·3. (생략)</p>	<p>제1조(목적) ----- 「<u>기부금</u> <u>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u> <u>활성화에 관한 법률</u>」----- ----- ----- -----</p> <p>제2조(정의) ----- -----</p> <p>1. ----- 「<u>기부금품의</u> <u>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u> <u>화에 관한 법률</u>」----- -----</p> <p>2.·3. (현행과 같음)</p>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우수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고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u>농산물품질관리법</u>」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p> <p>나. 「<u>친환경농업육성법</u>」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p> <p>다. 「<u>축산법</u>」 및 「<u>축산물가공처리법</u>」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危害) 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 ----- ----- -----.</p> <p>가. 「<u>농수산물 품질관리법</u>」에 따른 <u>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u></p> <p>나. 「<u>농수산물 품질관리법</u>」에 따른 <u>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원양산 포함)</u></p> <p>다. 「<u>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친환경농수산물</u></p>

<p>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 식품</p> <p>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p> <p>바. ~ 아. (생략)</p> <p>3. ~ 7. (생략)</p>	<p>라.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p> <p>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p> <p>바. ~ 아. (현행과 같음)</p> <p>3. ~ 7. (현행과 같음)</p>
--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그 밖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p> <p>-----</p> <p>-----</p> <p>-----</p> <p>-----</p>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p>	<p>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p>

<p>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국민신청실명제”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3. ~ 6. (생략) 	<p>제63조의5----- ----- ----- -----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 ----- ----- ----- ----- ----- 3. ~ 6. (현행과 같음)
--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금천구에 소재한 직장·학교·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 -----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금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 바. (생략)

2. ~ 7.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

다. ~ 바. (현행과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p>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소상공인”이란 「<u>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u>」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p> <p>-----.</p>
---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현행	개정안
<p>제66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u>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u>」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66조(기증품의 취득) ① -----</p> <p>-----</p> <p>----- 「<u>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u>」 제5조제2항-----</p> <p>-----</p> <p>-----.</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 5.·6. (생략)
- ③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기술 진흥법」-----

- 5.·6.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생략) ②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정부유

<p>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 -----.</p>
--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6. (생 략)</p> <p>7.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p> <p>8. 「<u>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p> <p>9. ~ 11. (생 략)</p> <p>② (생 략)</p> <p>③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u>」 제16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p>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3조----- ----- -----</p> <p>8. 「<u>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4조----- -----</p> <p>9. ~ 1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제28조----- ----- ----- -----.</p>

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 자동차 2. ~ 4. (생략)	----- ---- 2. ~ 4. (현행과 같음)
--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소음·진동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물환경보전법」----- ----- ----- ----- ----- ----- ----- -----
제4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제1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규제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u>만 65세</u>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면역력 강화를 통해 질병 발병률을 낮추고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1조(목적) ----- ----- <u>65세</u> ----- ----- ----- ----- ----- ----- ----- ----- ----- -----.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임시시장의 개설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u>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u>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u>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u>	제18조(임시시장의 개설취소) -- ----- ----- ----- -----. <u><삭 제></u> <u><삭 제></u>

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4. (생략)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금
천구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
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
다.

3.·4. (현행과 같음)

<삭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박민지
연 락 처	2627 - 1110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